

서울고등법원 2023. 7. 7 선고 2022나20313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C

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

담당변호사 엄상윤, 배기형

변 론 종 결 2023. 5. 12.

판 결 선 고 2023. 7. 7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26. 선고 2020가합606916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  
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,986,6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 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133,986,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가.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05,394,632원 및 그중 124,063,336원에 대하여 2020. 11. 6.부터, 81,331,243원에 대하여 2020. 11. 9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%,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1)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17. 체결된 매매계약

을 133,986,6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2) 피고 C는 원고에게 133,986,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(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)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(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 제외)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[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하거나 감축한 청구취지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므로,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과 이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B, 피고 C의 각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(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5653 판결 참조)]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‘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’

부분은 제외한다).

## 2.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1행의 “피고 B(개명 전: E)”을 “제1심 공동피고 B(개명 전: E, 이하 ‘B’이라 한다)”으로 고친다(이하의 “피고 B”을 모두 “B”으로 고친다).

○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9행, 8행의 각 “이 법원의”를 각 “제1심법원의”로 고친다.○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4행의 “인데” 다음에 “(피고 C는 피고 A의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 자산인 원자재 및 상품 재고와 기자재, 부자재 등의 동산자산이 존재하였고 그 가치가 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”를 덧붙인다.

○ 제1심판결 12면 중, ① 1행의 “352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로”를 “352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”로 고치고, ② 3~4행의 “위와 같은 ~ 제출되지 않았고,”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13면 중, ① 아래에서 2행의 “배상할 가액의 범위”를 “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”로 고치고, ② 아래에서 1행의 “앞에서” 앞에 “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”를 덧붙인다.

○ 제1심판결 14면 중, ① 1행의 “2021. 8. 4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25,000,000원인 사실”을 “2023. 4. 12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18,000,000원인 사실”로, ② 아래에서 6~3행의 “이 사건 부동산의 ~ 223,798,528원이다.” 부분을 “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217,724,591원(= 518,000,000원 - 300,275,409원)이고,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액수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인 223,798,528원 중 일부인 133,986,606원으로(2023. 5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,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가액회복을 마친 액수만큼을 공제하여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청구하고 있다)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액수이다.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133,986,6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

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33,986,606원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”로 각 고치고, ③ 3행의 “인정된다” 다음에 “[피고 C는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대하여, 2022. 3. 18. 이루어진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통해 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가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, 요인비교치는 평가시점과 무관함에도 동일한 감정인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 시와 다른 수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, 위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년에 걸친 시도 끝에 매도한 실제 거래가액인 4억 2,000만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6다67602, 67619 판결 등 참조),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]”를 덧붙인다.

○ 제1심판결 15면 1, 2행의 각 “223,798,528원”을 각 “133,986,606원”으로 각 고친다.

### 3. 추가 판단 부분(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)

#### 가. 피고 C의 항변 요지

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.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, 확정되었고, 피고 C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84,998,466원을 지급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친 범위(84,998,466원) 내에서,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.

#### 나. 판단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(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83,737,9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83,737,9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)이 확정된 사실,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피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84,998,466원(= 가액배상금 83,737,985원 + 지연손해금 743,179원 + 소송비용 517,302원)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[을 제9, 10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]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액배상금 83,737,985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(피고 C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지연손해금 743,179원과 소송비용 517,302원은 위 확정판결이 지급을 명한 가액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와 중첩되는 범위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).

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133,986,606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217,724,591원에서 위와 같이 가액회복을 마친 83,737,985원을 공제한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확정판결에 따라 가액의 회복이 마쳐진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므로,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#### 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(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)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다만,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.

대지권 비율 : 1802.9분의 17.22 끝.

재판장    판사 강승준, 판사 김민아, 판사 양석용, 목 록, (1동의 건물의 표시), 서울특별시 강남구 M에 있는 N건물, [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O],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, 건물번호 : P, 구

조 : 철근콘크리트조, 면 적 : 144.28㎡, 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, 토지의 표시 : 서울특별시  
강남구 M 대 1802.9㎡, 대지권 종류 : 소유권대지권